

#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
## I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

1. 신고기간 : 2021년 5월 1일 ~ 5월 31일
2. 신고방법
  - ① 인터넷 : 흠택스([www.homtax.go.kr](http://www.homtax.go.kr))
  - ② 유선 : ARS신고(1544-9944)
  - ③ 위탁신고 : 세무대리인
3.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(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4항)

| 구분            | 기장신고자         |               | 추계신고자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유형            | 복식부기<br>의무자   | 간편장부<br>대상자   | 기준경비율<br>대상자  | 단순경비율<br>대상자  |
| 수입금<br>(직전연도) | 1억5천만원<br>이상자 | 1억5천만원<br>미만자 | 3천6백만원<br>이상자 | 3천6백만원<br>미만자 |

- ※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 선택이 가능하나, 4천8백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20% 적용.
- ※ 그러나,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신고는 추계신고 시 보다 경비가 많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 20%를 부담하더라도 추계신고가 더 절세될 수 있음.

## II 종합소득세 신고유형

### 1. 간편장부 신고란?

-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을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에 대한 회계지식 필요한 만큼 소규모(1억 5천만원 미만) 사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으로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
-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,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작성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서 작성

※ 간편장부 신고의 경우라도 기장작성 방법이 어려울 수 있고 거래내용 기장의 오기·누락 등으로 인해 최종세액이 증가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 및 126콜센터(국번없이 126)로 문의하시거나 세무대리인 이용을 권고드립니다.

### 간편장부 양식(예시)

| ①<br>날짜 | ②<br>거래내용 | ③<br>거래처  | ④수입       |         | ⑤비용     |        | ⑥고정자산 증감 |     | ⑦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
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금액        | 부가세     | 금액      | 부가세    | 금액       | 부가세 |     |
| 1. 2    | 운송수입      | 한국물산      | 5,000,000 | 500,000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| 세계  |
| 1. 4    | 유류비       | 한영<br>주유소 |           |         | 150,000 | 15,000 |          |     | 세계  |
| 1. 9    | 유가보조금     |           | 1,000,000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|
| 1. 15   | 차량수리비     | 한국<br>카센터 |           |         | 800,000 | 80,000 |          |     | 세계  |

## 2. 주계신고란?

- 별도의 장부작성 없이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(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)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제도

### III 종합소득세 계산

## 1. 소득공제

- 1) 기본공제 : 각 목에 해당하는 1명당 150만원
  -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
  - 본인(그 배우자를 포함)과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(20세 이하, 60세 이상)

## 2) 추가공제

- 경로우대 : 1인당 100만원(70세 이상)
- 장애인 : 1인당 200만원

- 여성공제 :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,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
- 한부모 공제 :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

3) 연금보험료 공제 : 공적연금 관련법(국민연금)에 의하여 납입하는 연금 보험료

## 2. 소득세율 (소득세법 제55조)

| 종합소득과세표준<br>(※ 과세표준 = 소득금액 - 소득공제액) | 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,2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| 6%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| 72만원 + 1,200만원 초과 금액의 15%     |
|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| 582만원 + 4,600만원 초과 금액의 24%    |
| 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              | 1,590만원 + 8,800만원 초과 금액의 35%  |
|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| 3,760만원 +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38%   |
|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| 9,460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   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| 1억7,460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  |
| 10억원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억8,460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 |

## 3. 세액공제

- 1) 자녀세액공제 :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
  - 1명인 경우 : 15만원
  - 2명인 경우 : 30만원
  - 3명 이상인 경우 : 30만원 +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
- 2) 표준세액공제 : 7만원 (※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)
- 3) 연금계좌세액공제 : 연금계좌 납입금의 12%,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(단, 납입금액 연 400만원 한도)

IV

필요서류

○ 택시소득

- 종합소득세 안내문
  - 5월 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택으로 발송
  - 노란우산공제 및 국민연금 납입내역은 소득세 안내문에 기입되므로 별도 준비 필요 없음
- 2020년 본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서
  - 각 카드사에 요청 (단, 흠택스 사업자 등록카드는 불필요)
- 2020년 조합비 납부내역서
  - 조합 또는 소속지부에서 발급(단, 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 사용내역서에 기입되므로 별도 준비 불필요)
- 2020년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료 납부 내역서
  - 가입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발급(단, 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 사용내역서에 기입되므로 별도 준비 불필요하며, 공제조합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일괄 발송)
- 2020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
  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nhis.or.kr/>) 또는 1577-1000
- 2020년 기부금 납입내역서
  - 교회, 절, 성당 등
- 부양가족 확인서류
  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)  
※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: 미성년자(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, 직계존속(배우자의 부모도 가능, 1960년 이전 12월 31일), 장애인(나이제한 없음)

## ○ 연금소득

- 2020년 연금 지급명세서
  - 연금관리공단 및 연금을 지급받은 개별보험사에서 발급

## ○ 세무대리 이용 시 추가필요 사항

- 신분증사본
- 사업자등록증사본

V

참고사항

## ○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금에 국고보조금(유가보조금) 등을 합산한 것으로

로 수입금액 및 납부세액은 개인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-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조합 일괄신고가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.
    - 개인별 소득공제내역(가족사항 등)이 상이하고 개인택시사업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총 소득을 계산해야 하므로 조합 대행으로 일괄신고 불가.
  - 전년도 소득이 낮아(최소 공제기준 약 2천9백만원 이하)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, 극히 소액일 경우 방문신고 및 필요서류 준비없이 유선(1544-9944) 혹은 세무서에서 발송한 우편(모두채움신고서)회신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.
    - ‘신고유형이 F, G, H인 사업자로 우편물 우측 상단에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’
  -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소득관련 증명서류 발급 등이 제한되며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-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조합원님께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 -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시, 납부세액 미발생 소득금액
    - 중형택시 : 28,985,507원 이하
    - 모범(대형)택시 : 19,047,619원 이하
- ※ 기본공제 150만원 및 표준세액공제 7만원 등 최소공제 기준

상담전화 : 070-8804-1444(박동철 회계사 사무소) 010-2659-3728